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1.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내 인정유효기간 내로 정한다.

2. 계약목적

-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6년 1월 1일 기준]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르며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240분 이상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검토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재가급여
일반	15%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9%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	6%
기초수급권자	0%

4.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인은 수급대상자(보호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2)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대상자(보호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3) 신원인수인은 수급대상자(보호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5) 신원인수인은 수급대상자(보호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수급대상자(보호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대상자(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